

「2022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」

검 토 보 고 서

본 승인안은 2023년 5월 2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, 2023년 6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.

1. 제안이유

2022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사항을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 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3,920,000천원으로서, 이중 12건에 2,437,063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내역은

<u>계(12건)</u>	<u>2,437,063천원</u>
○ 부서신설에 따른 집기비품 구입 및 부서운영비	12,440천원
○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 코로나19 확진자 선거관리경비	50,325천원
○ 생활쓰레기 강릉시 반입저지에 따른 적치해소	500,000천원
○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	200,000천원
○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사업	100,000천원
○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	380,000천원
○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차단 울타리설치	668,750천원
○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	90,000천원
○ 6.23~24, 6.29~30. 호우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 및 재난지원금	155,771천원
○ 8.8~8.17. 호우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 및 재난지원금	266,180천원
○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	6,337천원
○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폐기물 처리	7,260천원 임.

3. 검토의견

- 예비비는 예산 운용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,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,
 - ▶ (일반회계) ~ 계상하여야 하고 (기타특별회계) ~ 계상할 수 있다
 - ▶ 재해·재난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
 - ▶ 예산안 심의시 폐지·감액된 지출항목 분야에 예비비 사용불가
- 또한, 예비비의 지출사항은 「지방재정법」 등 관계법령에 의거, 그 사용금액과 명세서 현황이 포함된 내역을 별도 안건으로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
- 2022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3,920,000천원이며, 예비비 지출은 8개 부서에서 12건에 2,437,063천원을 지출결정하여, 그 중 1,755,70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681,36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.
 - ▶ 일반예비비 3건, 562,765천원 (예산액의 46.5% 지출 결정)
 - ▶ 재난목적 예비비 9건, 1,874,298천원 (예산액의 14.7% 지출 결정)

<예비비 지출·집행현황>

(단위: 천원)

회계별 (구분)	지출 건수	지출 결정액(a)	지출액 (b)	이월액 (c)	집행잔액 (d)=(a-b-c)	비고
합계	12	2,437,063	1,755,702	0	681,361	
일반회계	12	2,437,063	1,755,702	0	681,361	
일반예비비	3	562,765	403,693	0	159,072	801-01
재난목적 예비비	9	1,874,298	1,352,009	0	522,289	801-02
기타 특별회계	0	0	0	0	0	

○ 이와 같은 예비비 편성과 지출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

▶ 일반예비비로

- “부서신설에 따른 집기비품 구입 및 부서운영비” ,
“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 선거관리경비”
“생활쓰레기 강릉시 반입저지에 따른 생활쓰레기 적치 해소” 등
총 3건을 편성하였으며,

▶ 재해·재난목적 예비비로

- “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” ,
“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” ,
“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” ,
“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원” ,
“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차단 울타리설치 ” ,
“6.23~24, 6.29~30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및 재난지원금 ” ,
“8.8~8.17. 호우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 및 재난지원금 ” ,
“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” ,
“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폐기물 처리” 등 총 9건의
재난에 대응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.

- ▶ 조직개편에 따른 제반 소요경비, 코로나19 확산 피해 최소화 및 자연재난 복구 등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집행한 것으로,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8조에 따른 예비비 사용 제한범위 내에서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【관련법령】

□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(예비비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-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(예비비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,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·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8조(예비비 사용의 제한)

- ① 업무추진비·보조금(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.